



# 중국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전폭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업의 투자확대 이끌어

## 2006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본격적인 지원 시작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은 2006년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중국 최초의 법으로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명시되어 관련 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후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중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중국 중앙정부의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2009년도에 투자총액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다. 2010년 10월 국무원에서 공식적으로 “전략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및 발전 중점산업으로 분류하고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자동차산업도 육성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은 에너지원 다양화 및 에너지 산업구조 개선, 농촌 벽지지역 전력 문제 해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대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전폭적인 세제혜택 부여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환경, 원자력분야 세제혜택						
우대혜택	기본세율	풍력	태양광(열)	수력	오폐수처리	원자력
기업소득세	25%	이익발생연도~3년: 면제, 4~6년: 12.5% 특정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15%				
증치세 (부가가치세)	17%	8.5%	17%	6%	면제	선징수후환급
설비관련	자가 사용 목적 설비, 부품, 기술 수입 시 관세 및 증치세 면제					

출처: 베이징 KBC 정리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원자력 분야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인세) 관련, 기업이 폐수, 폐가스 등을 주요 원료로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이용한 프로젝트 및 서부대개발 관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유관정책에 근거하여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부과 한다. 더불어 2008년 1월 실시된 ‘기업소득세’에 따르면 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 처리, 메탄가스 종합이용, 에너지 절약기술 개조, 해수담수화 등의 프로젝트는 이익이 발생한 첫해부터 3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년에서 6년까지는 기존의 50%에 해당하는 12.5%만 징수하게 되어 있다.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관련, 2001년 1월 1일부터 바이오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증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고 있으며 풍력발전의 경우 50%를 면제한

8.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국가가 비준하여 지정한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경우 바이오에탄올에 대해서는 증치세의 선징수, 후환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縣)급 이하의 소형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판매에 대한 증치세를 6%로 감면하여 징수하고 있다.

소비세 관련, 2005년부터 국가가 비준한 지정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바이오에탄올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입관세 및 수입 증치세 관련,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수입 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기타 우대정책으로, 풍력의 경우 발전소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 토지관련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대출시 중국 인민은행 고시금리의 90%를 적용하는 금리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해 가속감가상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및 유동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재원확보가 당면과제

2011~2016의 경제개발 계획인 중국의 제15차 경제개발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차 에너지소비 비중의 11.4%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국가가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리드 연결 및 송전선 건설은 해당지역의 송전망 회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전기요금 추가 보조 자금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기감독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0% 늘어났으나 2010년에 징수한 100억 위안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세 추가 보조금은 국내 기업의 보조금 수요의 70% 밖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향후 10년의 Master Plan,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국무원 비준 임박

향후 10년간의 중국 에너지 발전 계획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이 국무원에서 비준 대기 중이다. 중국국가에너지국, 공업신식화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위원회가 작성한 이 계획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에너지, 석탄의 청정 이용, 스마트 전력망 등 7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계획이 출범하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또 한번의 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 **K**

### 중국기업 화톰의 풍력발전 현장



중국 정부는 금년 6월 미국 USTR의 불공정거래 제기로 풍력발전 터빈 구매 시 제공하던 보조금을 전격 취소하였다.

출처 : 화톰 웹사이트

### 헤이룽장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조감도



KOTRA가 국내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중인 발전소 현장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바이오매스발전 지원 정책에 따라 중국국가전력공사(SGCC)에서 kWh당 0.75위안에 구매한다.

출처 : KOTRA 베이징